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27528(본소), 2021가합19876(반소) 판결

[매매대금 · 정산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변론 종결 2021. 11. 4.

판결 선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44,811,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7.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08,317,007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20. 6. 10. E 및 피고에게 D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 87대와 화성시 F의 토지 및 건물, 시설, 비품 등 자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3조

갑(D)는 양도물을 2020. 6. 30.까지 을(E)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총 61억 원에 양도기로 한다.

제5조

대금 지불 조건은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0억 원(6월 10일까지), 6월 30일까지 20억 원을 지급한다. 갑이 가지고 있던 대출금 5억 원은 을이 넘겨받기로 하며, 나머지 5억 원은 미지급금 중 종사원 급여 등 정리가 되는 6월 30일 이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단 2020. 6. 30. 현재 재무제표 등 세무관련 서류를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재무제표를 검토 후 잔금 지급한다.)

제7조

갑의 전 종사원은 을이 계속 고용기로 한다.

제9조

갑이 운영 중에 발생하였던 모든 법적 소송건(최저임금법 소송문제 등), 세무관계(부가가치세 등)등은 을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갑이 모든 책임진다.

나. 피고는 2020. 6. 30. 원고 A과 사이에 D 주식 5,266주를 279,914,23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9,914,230원은 계약체결 당일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20. 7.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원고 B과 사이에 D 주식 15,472주를 822,342,35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72,342,350원은 계약체결 당일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20. 7.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D의 양도시점인 2020. 6. 3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 주식대금 각 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16. 원고들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결산 가감정산 예정안'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 232,390,128원(= D 지급금 289,242,440원 - G 지급금 56,852,312원)을 1/2로 나눈 116,195,064원을 위 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한 133,804,936원(= 2억 5,000만 원 - 116,195,064원)을 각 지급하였다.

1	H공제조합 책임 및 종합보험료 기간별 보험료 환급금	51,489,014
2	위임(컨설팅)계약서 [I노무법인]	4,000,000
3	SK통신료(7월) - J소송건-	323,400
4	SK통신료(8월) - J소송건-	282,904
5	K조합21명 퇴직연금 전환금(1월 ~ 6월)	14,289,440
6	저성과자 미지급임금(3월 ~ 6월)	66,779,670
7	L(부장) 퇴직금	26,132,505
8	M(실장) 퇴직금	97,034,535
9	N(과장) 퇴직금	27,980,717
10	○(차장) 퇴직금	930,255

1	H공제조합 책임 및 종합보험료 기간별 보험료 환급금	51,489,014
	합계	289,242,440

1	휴게차량 4대 등록비	1,730,300
2	H공제 휴게차량 17대 보험료 환급금	10,669,130
3	휴게차량 4대 계약, 인도금	31,400,000
4	캐피탈 할부	1,296,006
5	자동차할부금 마지막회 2대(미출금분) 7/25	2,000,000
6	자동차할부금 마지막회 2대(미출금분 이자)7/25	15,342
7	시청 명의변경비용	261,000
8	법인재산세(7월 21일)	1,244,050
9	대출이자	566,029
10	자동차세(2020년 1월 ~ 12월)	1,172,405
11	P 동수원(서비스료) 7월, 8월	253,000
12	시청 카드수수료 지원금(4월 ~ 6월분)	5,871,930
13	시청 카드통신료 지원금(4월 ~ 6월분)	373,120
	합계	56,852,3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산가감정산 예정안 기재 D 지급금 중 순번 7 내지 10 기재 퇴직금 합계 152,078,012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반소로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7, 8, 10 기재 금원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순번 4, 5, 6, 9 기재 금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

152,078,012원에서 반소 청구금액 중 원고들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7, 8, 10 기재 합계 62,454,149원을 공제한 89,623,863원(= 152,078,012원 - 62,454,149원)을 1/2로 나눈 금액 44,811,931원(= 89,623,863원 × 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피고가 원고들 대신 납부하거나 원고들이 잘못 가져간 다음 표(이하 '반소 청구내역표'라 한다) 기재 합계 108,317,0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퇴직연금 보험료 불입 누락	27,701,400
2	Q 기사 소송 판결금	7,153,721
3	R 기사 소송 판결금	4,636,832
4	등록 말소된 차량 4대 대체를 위한 신차 구입 등록비	1,730,300
5	등록 말소된 차량 4대 대체를 위한 신차 구입 계약, 인도금	31,400,000
6	등록 말소된 차량 4대 대체를 위한 신차 구입 S캐피탈 할부금	1,296,006
7	2020년 최저임금 미지급금	20,599,301
8	지방세(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2,096,755
9	2020년 연차수당 지급분	11,436,552
10	일자리 안정지원금환수(T)	266,140
	합계	108,317,007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원들 퇴직금(이 사건 결산가감정산 예정안 중 순번 7 내지 10번)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에서는 피고가 D의 전 종사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L, M, N, O의 고용 역시 피고에게 승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직원들이 2020. 6. 30.자로 작성한 사직서는 원고들이 운영하던 'D'가 아니라 'G 대표이사 U 귀하'를 상대로

하고 있고, 이들이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부터 2020.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따라서 위 직원들이 작성한 사직서와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은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형식상 위 직원들을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원들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위 사직서 작성을 전후하여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산가감정산 예정안 중 순번 7 내지 10번 기재 직원들 퇴직금 152,078,012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등록 말소된 차량 4대 관련 비용(반소 청구내역 표 중 순번 4, 5, 6번)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서는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양도물 가액을 6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양도대금 61억 원은 ㉠ D가 보유하고 있던 택시 87대 면허를 각 5,000만 원으로 계산한 43억 5,000만 원과 차고지 가액 22억 4,800만 원(= 562평 × 400만 원)을 합한 65억 9,800만 원에서 ㉡ 택시 25대의 할부미납금 2억 3,000만 원과 미등기 차량 17대의 캐피탈할부금, 계약인도금, 차량등록비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 61억 1,8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가 상호 조정하여 산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말소된 차량 4대 관련 비용은 이미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대금을 산정할 당시 대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2020년 연차수당(반소 청구내역 표 중 순번 9번) 살피건대, 연차휴가수당은 전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그 다음 해에 받는 것이어서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2020년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2020. 12. 31.경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D의 양도시점인 2020. 6. 30.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20년 연차수당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나. 구체적 계산

1) 원고들이 이 사건 결산 가감정산 예정안 표의 D 지급금 중 직원들 퇴직금(순번 7번 내지 10번) 합계 152,078,012원을 피고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소 청구내역 표 중 순번 1 내지 3, 7, 8, 10번 합계 62,454,149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 돈은 89,623,863원(= 152,078,012원 - 62,454,149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부담 비율인 1/2로 나누면 44,811,931원(= 89,623,863원 × 1/2,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811,93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중 등록 말소된 차량 4대 관련 비용(반소 청구내역 표 순번 4 내지 6번)과 2020년 연차수당(반소 청구내역 표 순번 9번) 합계 45,862,858원 부분이 이유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청구권(반소 청구내역 표 순번 1 내지 3, 7, 8, 10번) 합계 62,454,149원은 원고들이 본소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여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청구권이 각 44,811,931원 남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춘근

판사김진성

판사김민아